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11.23(수) 10:0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임회무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2일

3.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도 동일한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도 동일한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